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단364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1나85990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단3647 판결

전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원고들 소송대리인 G

피 고 1. H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진영, 민경태

2. I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7. 21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들에게, 피고 H은 안성시 J 전 9223㎡ 중 3630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2015. 9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I은 안성시 J 전 9223㎡ 중 363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1996. 6. 5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분리

- 1) 안성시 J 전 922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3630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, 1960. 5. 3.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‘이 사건 1지분’이라 한다).
- 2) 1973. 3. 3. 이 사건 토지 중 3630분의 2038 지분에 관하여, 1974. 7. 18. 이 사건 토지 중 3630분의 1292 지분에 관하여 각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- 3) L은 1974. 8. 21. 이 사건 토지 중 363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1974. 8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M 명의였던 3630분의 30 지분을 ‘이 사건 2지분’이라 하고, L 명의로 남은 나머지 3630분의 3300 지분을 ‘이 사건 3지분’이라 한다).

나. 이 사건 각 지분의 이전

- 1) 이 사건 1지분에 관하여는 상속, 매매 등을 거쳐 2002. 3. 29.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

마쳐졌다.

2) 이 사건 2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I이 2010. 3. 4. 2010. 2. 23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N는 1995. 3. 9. 이 사건 3지분에 관하여 1976. 6. 5.자 상속을 원인으로, 원고들은 2018. 5. 14. 이 사건 토지의 각 3630분의 550 지분에 관하여(원고들의 지분 합계는 3630분의 3300이다) 2018. 1. 14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N와 원고들은 1976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상속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왔으므로, 이 사건 1, 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.

나. 판단

1)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,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각 묘소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다른 한편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(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1418, 1419 판결, 대법원 1996. 7. 26. 95다51861 판결 등 참조),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뿐이다.

3)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양진호